

노인인권보호

2024년 4월 25일

강동희망요양센터

노인자살율, 노인빈곤율, 고령화속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이란?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고려하는 것을 의미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기

노인인권선언문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일상적인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기관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10.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기관과의 계약,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의 예방

노인학대 = 노인의 인권침해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

보건복지 콜센터 : 129

수사기관 : 112

개인정보보호

2024년 4월 25일

강동희망요양센터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

1. 수집 및 이용목적

- 이용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화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2. 수집항목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질병관련 이력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인정유효기간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장기요양기관 또는 제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항 및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분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 급 자 : (서명)

보 호 자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

1. 수집 및 이용목적

- 이용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화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2. 수집항목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질병관련 이력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인정유효기간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항 및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분

◆ 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